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38
----------	-------

발의연월일 : 2026. 9. 17.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임미애
김종민 · 송재봉 · 권칠승
전진숙 · 강득구 · 정진욱
황운하 · 손 술 · 조계원
윤종오 · 전종덕 · 김동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결정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음.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원 편중 등과 맞물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적 지위”를 “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 간의 교원 수급”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u>경제적 지위</u>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 ----- ----- <u>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u>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u>지역 간의 교원 수급</u>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 ----- <u>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 시설 · 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